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1회용품 포함 등〉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2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1회용품 제품 포함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9일 김기웅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신설> <신설>	-----용기(1회용품을 포함한다)의 제조업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폐기물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 제12조제1항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산(「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살충제·유독물 제품, 부동산액,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 6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함)을 부과하고 있고,

【 폐기물부담금 개요 및 부과 대상 】

□ 개 요

- 유해물질 함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1993년~)

□ 적용 대상

- (산정기준) 환경에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가 있으며, 재활용의 기술성과 경제성이 없는 품목
- (품목) ① 살충제·유독물 용기, ② 부동산액, ③ 1회용 기저귀, ④ 담배, ⑤ 플라스틱제품(36개 업종), ⑥ 고흡습성수지 아이스팩

※ △ “껌” 품목은 사용량 감소 및 배출문화 정착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24.7월)

- (납부자) 해당품목 제조 및 수입업자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법 제10조제1항2)에 따라 특정 시설 또는 업종의 사업자는 1회

3. 삭제 <2024. 6. 4.>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고흡습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용품³⁾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

【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현황 】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숙박업(50실 이상)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제도와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는 폐기물 발생 억제 목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폐기물부담금은 제조 단계의 비용 부과 방식이고 1회용품 규제는 소비 현장의 사용 제한이라는 차이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연구용역 보고서⁴⁾에 따르면, 물티슈는 사용 용도에 따라 크게 화장품에 속하는 인체세정용 물휴지와 위생용품에 포함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로 구분됨.

【 물휴지와 식당용 물티슈 구분 】

구 분	인체세정용 물휴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사용처	가정 등 개인 용도	식품접객업소 업장
사용 목적	인체 청결용으로 개인위생용도	식품섭취 전 손 세척
사용 대상	구매자 개인	불특정 다수
소비자 형태	구매자와 사용자 동일	구매자: 식품접객업주 사용자: 식품접객업소 손님
기타	-	업체의 무상제공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최적관리방안 마련 연구”, 2024. 2. p.9

물티슈 원단으로는 주로 재생섬유인 레이온⁵⁾과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⁶⁾ 혼방의 부직포 원단이 폭넓게 사용⁷⁾되는데, 제품 특성상 재활용이 불가능⁸⁾함에도 물티슈는 현행법령에서 1회용품에 포함되지

4) 기후에너지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최적관리방안 마련 연구”, 2024. 2.

5) 식물의 셀룰로오스를 재료로 하여 화학적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재생섬유

6) 폴리에스테르를 녹여 방사한 합성섬유

7) 식당용 물티슈나 가정에서 다목적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합성섬유의 혼방률이 높으며, 고급 식품접객업소나 유아용 물휴지의 경우, 레이온의 혼방률이 높거나 레이온 100%, 면 100%로 제작되고 있음.

8) 물티슈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위생문제와 밀접하여 간단한 세척 등으로는 재사용이 어렵고, 레이온 및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현재 재활용 기술 수준으로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함.

않으며,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⁹⁾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장실용 물티슈가 보급¹⁰⁾되고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가 변기와 하수관을 통해 유입되면서 관로 막힘, 하수 펌프장 고장, 스크린(여과망) 이물질 폐색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¹¹⁾시키고 있으며,

물티슈가 수계로 유출되는 경우 미세플라스틱 생성 등으로 인해 수생태계 오염¹²⁾ 등 환경문제를 유발¹³⁾하게 됨.

이에 개정안은 1회용품에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하고,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아울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1. ~ 5. (생략)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함유제품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생략)

10) 헬스조선, “비대용 티슈도 변기에 버리면 안 돼...이런 문제 초래한다”, 2024. 12. 19.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최적관리방안 마련 연구”, 2024. 2. p.75

12) 일회용 물티슈가 수계로 유출되면, 섬유조각이 풍화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고, 이를 수생생물이 먹이로 오인하여 섭취하게 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축적의 우려가 제기됨.

13) 기후에너지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최적관리방안 마련 연구”, 2024. 2. p.70-72

보임.

첫째, 현행법의 1회용품¹⁴⁾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의되나, 여기에 ‘합성수지 재질’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결합하는 경우 사용 횟수가 아닌 재질에 의해 1회용품 여부가 결정되는 개념적 혼선이 발생함.

이에 수년간 반복 사용하는 내구재 성격의 플라스틱 제품까지 규제 대상인 1회용품으로 간주하게 되는 논리적 모순을 초래하여 과잉 규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둘째, 모든 1회용품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현행 생산자 책임재활용(EPR) 제도와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이원적 운영 체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¹⁵⁾를 통해 기업에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한해 처리 비용 성격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원적 체계임.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모든 1회용품을 부담금 대상으로 포괄하게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되면, 이미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해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품목(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비닐장갑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담금이 중첩되어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됨.

셋째, 현행법령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폐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직접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해 주는 차등적 운영 체계를 규정¹⁶⁾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에 근거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바, 개정안과 같이 재활용 가능성 등 사전적인 기준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기존 제도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있어 얼마만큼의 추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재료·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
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

② ~ ③ (생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현행 규정상으로도 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1회용품 대상으로 포함¹⁷⁾할 수 있고, ②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은 폐기물부담금 제도나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으로 이미 관리 중이며, ③ 플라스틱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감액하는 등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차등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

17) 예) 합성수지 재질 1회용 컵·접시·용기 등